

의안번호	2213829
의 퇴 인	김성회의원
회 답 일	2026.1.22.
추계번호	25D5805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0조제1항제14호(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)	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범위에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0조제1항제14호(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데이터센터 추가(안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)
 - 개정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·경제적으로 피해가 커 소방안전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제1항¹⁾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추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1)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(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)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·관리하는 시설(이하 "데이터센터"라 한다)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현행법은 공항시설, 철도시설, 도시철도시설, 항만시설, 산업기술단지,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
-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·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
-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민관 협력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이터센터의 수, 데이터센터 1개소당 화재예방안전진단 비용,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의 하나이고 대전 본원, 광주 및 대구 센터로 구성되어 있음
 - 이외에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데이터센터 또는 민관협력의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향후 개정안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센터의 수, 1개소 당 화재예방안전진단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